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

서울시의원 전 병 주

존경하는 최기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! 그리고 선배, 동료 위원 여러분! 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1인 발의한 『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위원님들 앞에서 입법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본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교육용 스마트 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명시하고,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를 대비해 교육감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를 신설해 위기 상황속에서도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
또한, 교육감은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생과 교원에게 소속학교의 장이 지정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 이와 더불어 교육용 스마트 기기에 유해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교육을 저해하는 방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.

이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강제됨에 따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용 스마트 기기 등을 학생과 교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『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1인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『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』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,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 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